



보 도 자 료

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

팀 장	김 인 곤
담당사무관	최 관 병

▶ 2006. 12. 20 배포
▶ 총 쪽 (사진 없음)

T E L : 503-9719
E-MAIL :
FAX : 503-976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 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『차별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』 개최

- 노동부, 노·사 및 노동법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 -

- 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 기준」과 「기간제근로 기간 제한(2년)의 전문직 특례 인정에 관한 규정」 마련을 위해 노·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.
-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21일 14:00~17:00,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 사옥에서 『차별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』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토론회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, 박종희 고려대 교수(차별판단기준)와 김홍영 충남대 교수(기간제 사용시 기간제한의 전문직 특례)가 주제 발표를 한다.
-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희 교수는 『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』 용역 결과를 처음 공개한다.
 - 박종희 교수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로서 직무, 능력, 기능, 기술, 자격, 경력, 학력, 근속년수, 책임, 업적, 실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.
 - 차별금지영역으로는 임금 및 그 외 금품, 교육훈련·배치, 복지제도, 정리해고 등은 포함되나 모집·채용은 제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.

- 사회·경제적 차별은 임금체계의 비합리성에 기초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임금체계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무급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.
- 또한, 김홍영 교수는 기간제 사용 기간제한(2년)의 전문직 특례와 관련하여 『기간제근로 기간 제한 예외』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.
 - 김홍영 교수는 기간제 근로 기간제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기준법제 사례를 연구하였다.
 - 일본의 노동기준법령에서는 △박사학위 소지자, △공인회계사·의사·변호사·변리사 등 전문자격사, △임금연봉액 1075만엔 이상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직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.
- 토론자로는 노동계가 추천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부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하고, 경영계는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과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이 참여한다.
 - 학계를 대표해서는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,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.
- 이날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“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별판단기준이 마련되고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기간제한 특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”면서
 - “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”했다.
-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여
 - 차별판단 논의결과는 매뉴얼 형태로 노사에 제공하고,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전문직 특례는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